낚시어선 안전운항 등을 위한 의무사항 변경 고시

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, 수질오염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의무사항과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2016. 12. 02. 태 안 군 수

낚시어선 안전운항 등을 위한 의무사항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5조제2항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, 수질오염의 방지및 수산 자원의 보호 등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 제2조제8호의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(이하 "낚시어선업자"라 한다) 및 그 어선과 낚시어선의 승객에 적용한다.

- 제3조(영업시간) ①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(이하 "낚시어선" 이라 한다) 의 영업시간은 하계(4. 1~10. 31) 04:00 ~ 20:00, 동계(11. 1~익년 3. 31) 05:00 ~19:00까지로 한다.
 - ② 설치하지 않은 낚시어선 및 어선검사증서에 야간항행 금지 낚시 어선의 영업시간은 일출 30분전부터 일몰 30분후까지로 한다(일부 변경)
- 제4조(운항횟수)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켜 낚시장소에 안내하는 행위를 1일2회까지로 한다(단, 1회 낚시승객을 낚시장소에 안내하여 낚시승객이 낚시장소에 있을 경우 2회차 승객수는 1회와 2회 승객수를 합하여 승선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) 또한, 낚시어선업 행위는 당일 입·출항을 하여야하고 야영하면서 낚시어선업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.
 - 단, 낚시터업 허가를 득하고 낚시터 관리선으로 사용하는 낚시어선은 예 외로 하다
- 제5조(영업구역 등) ①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해역에서 낚시어선의 승객으로 하여금 낚시어선의 선상에서 낚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, 해사안전법, 원자력진흥법, 항만법,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
 - 2. 해상을 벗어난 구역
 - 3. 서해특정해역에서 낚시객을 태우고 선상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(단, 태안 지역 낚시어선중 태안군내 유인도서 지역에서 승객을 승·하선시키는 경 우는 제외)
 - ②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제외한 태안군 연안의 모든 도서, 갯바위 및 간출암에 낚시어선의 승객을 안내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1.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
 - 2.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외도
 - 3.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내파수도
 - 4.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궁시도

- ③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승객을 승선시켜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낚시장소에 안내하는 경우에는 그 승객이 당해 낚시장소에서 야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승객에 의하여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.
- 제6조(낚시어선의 승객 준수사항) ① 낚시 승객은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 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 - ② 낚시어선에 승선할 때에는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(선원)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 - 1. 낚시어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 - 2. 낚시어선업자(선원)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 사항이나 지시에 반하는 행위
 - 3.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안전운항등에 방해를 하는 행위
 - 4. 절벽과 위험한 갯바위 장소 등에 하선 또는 낚시를 하는 행위
 - 5. 안전대피 또는 철수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승선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하며, 또한 영업제한구역에 하선을 요구하여서는 안되다.
 - 6.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.
 - 7.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 관계법령에 규정한 포획금지 체장 (체중) 이하의 물고기는 포획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
- 제7조(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)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 시켜 낚시장소에 안내한 때에는 당해 승객과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(선주· 선원 및 승객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록하여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)하고, 기상 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한다. ②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영업통제구역에 출입해서는 아니 되며, 출·입항 신고의 이행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.
 - ③ 낚시어선업자는 반드시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를 갖추고, 출항전에는 기상상태 확인 및 항해·통신·기관·추진장치 등 각 설비에 대한

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안전운항과 승객에게 위해(危害)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낚시어선을 조종하여야 하며, 항해중에는 VHF 등 무선설비 및 V-Pass 등 위치발신장치를 정상 작동시켜야 한다.

- ④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,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낚시어선에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, 낚시 어선 신고확인증 및 안전운항 준수사항 등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낚시어선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⑥ 낚시터 주위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쓰레기 등을 무단투기를 해서는 아니된다.
- ⑦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, 충돌, 좌초 기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, 즉시 사고발생보고 후 인명구조 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⑧ 낚시승객들에게 구명조끼 등 구명장비 사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- ① 이 고시는 2016. 12. 02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태안군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준수사항 고시(태안군 고시 제2016-043)호는 폐지한다